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합의서

통 일 부

목 차

남북정상회담

- 남북합의서('00. 4. 8) 5
-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00. 5. 18) 7
- 6.15 남북공동선언('00. 6. 15) 15

남북장관급회담

- 제1차 회담 공동보도문('00. 7. 31) 21
- 제2차 회담 공동보도문('00. 9. 1) 24
- 제3차 회담 공동보도문('00. 9. 30) 27
- 제4차 회담 공동보도문('00. 12. 16) 30

남북국방장관회담

- 제1차 회담 공동보도문('00. 9. 26) 37

남북경제협분야 회담

- 제1차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 공동
보도문('00. 9. 26) 43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01. 1. 30) 45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01. 2. 3) 49

남북적십자회담

- 제1차 회담 합의서('00. 6. 30) 57
- 제2차 회담 합의서('00. 9. 23) 61
- 제3차 회담 공동보도문('01. 1. 31) 65

기 타

- 김용순특사 방문 공동보도문
('00. 9. 14) 71

남북정상회담

남북 합의서

남과 북은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이 금년, 2000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을 방문한다.

평양 방문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역사적인 상봉이 있게 되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쌍방은 가까운 4월중에 절차문제협의를 위한
준비접촉을 갖기로 하였다.

2000년 4월 8일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 측
문 화 관 광 부
장 관 박 지 원

상부의 뜻을 받들어
북 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 위원장 송 호 경

남북합의서(2000년 4월 8일) 이행을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

2000년 5월 18일 발효

남과 북은 2000년 4월 8일 합의서에 따라 4월 22일부터 5월 18일까지 판문점에서 5차례의 준비접촉을 가지고 실무절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대표단 구성과 규모

- ① 남측 대표단 수행원은 130명으로 한다.
- ② 남측 대표단 취재기자는 50명으로 한다.

2. 상봉 및 회담 형식과 횟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사이에 역사적인 상봉이 있게 되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상봉과 회담은 최소한 2~3회하며, 필요에 따라 더 할 수 있다.

3. 상봉 및 회담 의제

상봉 및 회담 의제는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로 한다.

4. 체류일정

- ① 남측 대표단의 북측 지역 체류기간은 2000년 6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2박 3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더 연장할 수 있다.
- ② 북측은 남측 대표단의 구체적인 체류일정을 방문 10일 전에 남측에 통지하며, 쌍방이 협의하여 이를 확정한다.

5. 선발대 파견

-
- ① 남측은 30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대표단 방문 12일 전에 북측 지역에 파견한다.
남측 선발대는 필요에 따라 판문점을 통하여 왕래할 수 있다.
 - ② 남측 선발대의 체류일정과 구체적 실무절차 문제는 남측 선발대의 북측 지역 도착 직후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왕래절차

- ① 남측 대표단의 왕래는 항공로 또는 육로로 하되 항공로로 하는 경우에는 남측 비행기로 하며 육로로 하는 경우에는 북측 자동차로 한다.
- ② 남측 선발대는 북측 자동차를 이용하며 통과지점은 판문점으로 한다.
- ③ 남측은 정상일행의 명단을 방문 7일전에 북측에 넘겨주며 선발대의 경우에는 방문 4일전에 북측에 넘겨 준다.

명단에는 성명, 성별, 직위, 소속을 밝히며 사진을 첨부한다.

명단을 넘겨준 후 변동되는 사항은 판문점을 통하여 먼저 전화로 통지하며 그 다음에 문서로 전달한다.

7. 편의보장

- ① 북측은 자기측 지역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들의 숙식, 교통, 통신, 의료 등 기타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 ② 남측 대표단은 북측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북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 ③ 북측은 남측 대표단의 북측 지역 체류기간 판문점을 통하여 1일 2회의 행낭운반을 보장한다.

8. 신변안전보장

- ① 북측은 자기측 지역을 방문하는 남측 인원

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총리 명의의 신
변안전보장각서를 방문 3일 전에 판문점을
통하여 남측에 넘겨준다.

- ② 북측은 남측이 이번 방문의 성격에 맞게 휴
대품을 소지하는 조건에서 그에 대한 불가
침을 원칙적으로 보장한다.

9. 수행원, 기자의 표지 및 증명서

- ① 쌍방은 자기측 수행원들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를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 ② 기자는 기자완장을 착용한다.
- ③ 남측 수행원과 기자는 자기측 총리가 발행
한 신분증명서를 휴대한다.

10. 상봉 및 회담장 표지 및 시설

- ① 상봉 및 회담장과 행사장(숙소 포함)에는 어
떠한 표지도 하지 않는다.
- ② 상봉 및 회담장에는 회담에 필요한 시설외

다른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는다.

- ③ 북측은 상봉 및 회담장과 행사장(숙소 포함)에서 남측이 연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제공한다.

11. 상봉 및 회담 기록

쌍방은 상봉 및 회담 기록을 속기, 녹음, 녹화 등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12. 상봉 및 회담 보도

- ① 상봉 및 회담 보도는 각기 편리한 대로 하되, 필요에 따라 공동보도문을 작성·발표할 수 있다.
- ② 북측은 남측에 실황중계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설비와 인원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며 텔레비전 영상 송출을 위한 전송로 및 위성 중계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
- ③ 북측은 남측에 실황중계를 위하여 남측 인원이 직접 촬영, 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편의를 보장한다.

13. 기자의 취재활동

- ① 북측은 남측 기자들의 체류기간 중 취재활동을 보장한다.
- ② 쌍방은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기로 한다.

14. 기타 실무절차 문제

- ① 남측 대표단은 북측 지역 체류기간 이미 개설된 서울-평양간 직통전화 회선과 함께 예비통신으로 위성통신망을 이용한다.
- ② 그밖에 제기되는 실무절차 문제는 남북고위급회담 관례에 따른다.

15. 합의서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0년 5월 18일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준 비 접 촉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통일부
차관 양영식

북남합의서 리행을 위한
준 비 접 촉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참사 김령성

남북공동선언

2000년 6월 15일 발효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 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

-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통	령	국	방	위	원	장
김	대	중	김	정	일		

남북장관급회담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0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 정상들의 역사적인 평양 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의 중대한 의의를 강조하고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당면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장관급회담을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부합되게 운영한다.

첫째, 남북장관급회담은 쌍방 정상들이 서명한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공동이익

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 이행문제를 협의·해결하는 대화가 되도록 한다.

둘째, 남북장관급회담은 불신과 논쟁으로 일관하던 과거의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 신의와 협력으로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는 대화가 되도록 한다.

셋째, 남북장관급회담은 민족 앞에 실질적인 결실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실천을 중시하며,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 나아가는 대화가 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1996년 11월에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던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업무를 2000년 8·15를 계기로 재개한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남과 북, 해외에서 각기 지역별로 남북공동선언을 지

지·환영하며, 그 실천을 위한 전민족적 결의를 모으는 행사를 진행한다.

4. 남과 북은 총련 동포들이 방문단을 구성하여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이와 관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남과 북은 경의선 철도의 끊어진 구간을 연결하며, 이를 위한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0년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2000년 7월 31일

서 울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0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중대한 의의를 다시금 강조하고, 그것이 훌륭한 결실을 가져오고 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실천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올해안에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 교환 사업을 두 차례 더 진행한다.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는 남북 적십자 단체들이 곧

-
- 토의 하며, 이와 함께 흠어진 가족, 친척들의 서신교환을 추진하는 등의 문제들을 협의한다.
2. 남과 북은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회담을 조속한 시일내에 가지도록 협의한다.
3.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와 관련한 쌍방 전문가들의 실무접촉을 9월중에 가진다. 그리고 남측은 북측이 연이어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실정에서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북측에 식량을 차관으로 제공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추진한다.
-

-
4. 남과 북은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를 연결하며,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9월중에 가지고 착공식 문제 등을 협의한다.
 5. 남과 북은 조속한 시일내에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6. 남과 북은 백두산, 한라산 관광단을 각기 100명 정도의 규모로 하여 오는 9월중순부터 10월초까지 사이에 상대측 지역에 보낸다.
 7. 남과 북은 제3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2000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한라산에서 개최한다. 장관급회담 대표단의 규모는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2000년 9월 1일

평 양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0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후 합의한 사항들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공동선언을 변함 없이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이미 여러 갈래 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문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앞으로의 실천적인 사업들을 계속 폭넓고 깊이있게

협의하고 성실히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제2차 회담에서 합의한 문제들과 함께 금년말부터 생사확인, 서신교환, 면회소설치 등에 관한 조속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제1차 실무접촉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평가하고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문제와 함께 분쟁해결절차와 청산결제제도 마련 문제도 빨리 타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제반문제를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협의·설치한다.

-
5. 남과 북은 학술·문화·체육 등 제반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는 바탕위에서 남측은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며 정기적으로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문제와 시범적으로 교수·대학생·문화계 인사 등의 방문단을 상호교환하는 문제를 제의하였고, 북측도 위의 제안을 포함하여 교류 협력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연구·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쌍방은 제4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협의·결정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0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3박 4일간 개최하기로 한다.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한다.

2000년 9월 30일

제 주 도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0년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지난 6개월 동안의 사업 추진결과를 평가하고 2001년을 맞으며 남북공동선언을 적극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한다.

이 위원회는 각기 차관(부상)급을 수석대표(단장)로 하여 5~7명으로 구성하며, 2000년 12월 26일경에 첫 접촉을 평양에서 하되 여기에서는 전력협력 문제를 비롯하여 철도 및 도로 연결 문제, 개성공업단지 건설 문제, 임진강유역 수해방지사업 추진 문제 등 당면한 경제협력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결한다.

2. 남과 북은 어업부문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북측이 남측에 동해 북측 어장의 일부를 일정한 기간 제공할 것을 제의한데 대해 쌍방 당국의 관계자들이 빠른 시일안에 금강산 지역에서 접촉을 가지고 협의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태권도 시범단 교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쌍방 태권도 단체들 사이의 접촉을 권고하기로 한다.

-
4.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 확인 사업과 서신교환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되 생사·주소 확인은 2001년 1월과 2월에 각각 100명씩, 서신교환은 2001년 3월에 300명 정도로 한다.
 5. 남과 북은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2001년 2월말에 100명씩 한다.
 6. 북측은 한라산 관광단은 2001년 3월, 경제시찰단은 2001년 상반기에 파견한다.
 7. 남과 북은 쌍방 수석대표(단장)들이 서명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대해 각기 발효절차를 거치며 그 결과를 상대측에 통보

하기로 한다.

8. 남과 북은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1년 3월중에 개최하며 장소는 추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000년 12월 16일

평 양

남북국방장관회담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간 회담 공동보도문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6.15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 사이의 회담이 9월 25일부터 26일 사이에 남측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남측에서 대한민국 조성태 국방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의 대표들과 북측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 김일철 차수를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 이후 그 이행을 위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군사적 조치들이 요구되고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합의하였다.

1. 쌍방은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민간인들의 왕래와 교류, 협력을 보장하는데 따르는 군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여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긴요한 문제라는데 이해를 같이하고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3. 쌍방은 당면 과제인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공사를 위하여 각측의 비무장지대 안에 인원과 차량, 기재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며, 쌍방 실무급이 10월초에 만나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 세부사항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주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관할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처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쌍방은 2차 회담을 11월 중순에 북측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0년 9월 26일

제 주 도

남북경협분야 회담

제1차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확대·발전시키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2000년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경제협력 실무접촉을 개최하였다.

실무접촉에서는 6.15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 장관급 회담의 합의에 따라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빠른 시일 내에 타결키로 하였다.

쌍방은 투자보장 합의서와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에 대한 토의를 진지하게 진행하였으며, 합

의서 초안에서 나타난 차이점들을 제2차 접촉에서 합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사분쟁 해결절차와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가 필요하다는데 이해를 같이 하고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된데 따라 앞으로 실무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2차 접촉은 10월 18일 평양에서 갖기로 하였다.

2000년 9월 26일

서 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00년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쌍방은 남북사이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2001년 1월 8일부터 1월 30일 사이에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다.
2. 남과 북은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전력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전력협력실무협의회와 전력실태공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전력협력실무협의회는 각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을 책임자로 하여 3~5명 범위에서 구성하고, 전력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는 2001년 2월 7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며 여기에서 전력실태공동조사문제 등을 토의한다.

전력실태공동조사단은 각기 국장급을 책임자

로 하여 7~10명 범위에서 편리한 대로 구성하며, 전력실태공동조사는 2월중에 착수한다.

3. 남과 북은 임진강수해방지사업의 협력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와 임진강수해방지공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는 각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을 책임자로 하여 3~5명 범위에서 구성하며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는 2001년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임진강수해방지공동조사단은 각기 국장급을 책임자로 하여 7~10명 범위에서 편리한 대로 구성하며, 임진강수해방지 공동조사는 3월중에 착수한다.

-
4. 남과 북은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 연결 및 문산-개성간 도로 개설, 개성공단(공업지구) 건설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2001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실무협의를 시작한다.

 5.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01년 2월 하순경 서울에서 개최하며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 협의·확정한다.

2001년 1월 30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 차 관
이 정 재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제1부위원장
전 금 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2001년 2월 3일 발효

남과 북은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제시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구체적으로 협의·실천하기 위하여 남북장관급회담 산하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 1명과 위원 4~6명으로 구성한다.

-
- ② 위원장은 차관(부상)급으로 하며,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정한다.
 - ③ 쌍방은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④ 수행원은 각기 5~7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 ⑤ 쌍방은 필요한 경우 합의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실무협의회들을 둘 수 있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위원회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의 합의 또는 위임에 따라 쌍방 당국 사이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주관한다.
 - ② 위원회는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쌍방 당국 사이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이행한다.
 - ③ 위원회는 쌍방간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

필요한 경우 합의문건을 작성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실무협의회들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 사이에 분야별 실무협의회 회의를 운영한다.
- ③ 위원회 회의는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④ 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⑤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도 있다.

-
- ⑥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에는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 ⑦ 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 제공과 회의 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⑧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쌍방 위원장 또는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단장)가 각기 합의문건에 서명·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합의문건은 남북장관급회담 쌍방 수석대표(단장)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1년 1월 30일

남 북 장 관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통 일 부 장 관
박 재 규

북 남 상 급 회 담
북측대표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각 책 임 참 사
전 금 진

남북적십자회담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면회소 설치·
운영 및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관한 합의서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2000년 6월 30일 발효

남북적십자단체대표들은 역사적인「남북공동 선언」에 따라 2000년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강산호텔에서 올해 8.15에 즈음하여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면회소 설치·운영 및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 ① 이산가족방문단은 2000년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3박4일) 동시 교환한다.
- ② 방문단은 책임자 1명, 이산가족 100명, 지원

인원 30명, 취재기자 20명으로 구성하며, 방문단 책임자는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 ③ 방문단의 방문지는 서울과 평양으로 한다.
- ④ 쌍방은 방문단 후보자 명단을 방문 30일전에 각기 200명씩 교환하며, 그중 생사·소재를 확인한 후 확정된 방문자 명단을 방문 20일전에 통보한다.
- ⑤ 쌍방은 지원인원, 취재기자를 포함한 방문단 최종 명단을 방문 7일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⑥ 방문단 교환 절차는 1985년 방문단 교환 관례에 따르며, 교환 경로는 육로 또는 항공로로 한다.

2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

- ① 쌍방은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한다.
- ② 면회소 설치·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비

전향장기수를 전원 송환하는 즉시 적십자회
담을 열고 협의·확정한다.

3. 비전향장기수 송환

- ① 남측은 북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장
기수 전원을 2000년 9월초에 송환한다.
- ② 남측은 북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장
기수들의 명단과 실태자료를 송환 15일전에
북측에 통보한다.
- ③ 북측은 북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장
기수 명단을 넘겨 받은 다음 확인한데 따라
송환 10일전에 남측에 명단을 통보한다.
- ④ 비전향장기수 송환 절차는 1993년의 관례에
따르며, 송환 경로는 육로 또는 항공로로
한다.

4. 합의서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0년 6월 30일

「남북공동선언」이행을 위한
남 북 적 십 자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적 십 자 사

사 무 총 장 박 기 분

「북남공동선언」이행을 위한
북 남 적 십 자 회 담
북측대표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중앙위원회

상 무 위 원 최 승 철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남북적십자단체 대표들은 2000년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금강산호텔에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들의 세부 이행절차를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이산가족방문단 추가교환

- ① 제2차 방문단 교환은 2000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제3차 방문단 교환은 12월 5일부터 7일까지 각각 2박 3일간씩 동시 교환한다.
- ② 방문단 규모 및 기타 교환절차는 8.15 방문단 교환시의 전례를 따른다.

2. 생사·주소확인

- ① 쌍방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명단을 시범적으로 9월에 100명, 10월에 100명씩 교환하며, 그 이후부터는 교환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 ② 쌍방은 상대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신청자 명단에 대해 생사·주소확인 작업을 즉시 개시하고, 그 결과는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③ 명단 및 결과 통보 양식은 8.15 방문단 교환시의 전례를 따르되, 명단에는 신청자의 현 주소를 포함시키고, 결과 통보서에는 대상자의 현주소 및 사망일자(사망시) 등을 포함한다.

3. 서신 교환

- ① 쌍방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들의 생사·주소가 확인되는 데 따라 그들 사이의 서신
-

교환을 진행한다.

- ② 쌍방은 시범적으로 11월중에 생사·주소가 확인된 300명을 대상으로 서신교환을 실시하고, 그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그 구체적 문제는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협의·확정한다.

4.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

쌍방은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면회소 설치·운영에 따른 구체적 절차 문제를 협의·확정한다.

5.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은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한다.

6. 합의서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0년 9월 23일

남 북 적 십 자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석대표 박 기 룡

북 남 적 십 자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최 승 철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공동보도문

남북적십자사 대표들은 2001년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금강산호텔에서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을 서울과 평양에서 2월 26일부터 28일까지(2박 3일) 동시에 교환한다.

방문단 규모 및 기타 교환 절차는 제1·2차 방문단 교환시의 전례를 따른다.

제3차 방문단 교환을 위해 1월 31일 교환한 방문 후보자 명단에 대한 회보서는 2월 15일에 교환하며, 최종 방문단 명단은 2월 17일에

교환한다.

2. 생사·주소가 확인된 300명을 대상으로 한 이산가족들의 서신교환은 3월 15일 판문점 적십자연락사무소를 통해 실시한다.
이때 교환되는 서신은 편지로 하고, 1~2매의 가족사진을 함께 보낼 수 있다.
3. 2월중 실시하기로 한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확인 대상자(각기 100명) 명단은 2월 9일에 교환하며, 그 결과에 대한 통보는 2월 23일에 한다.
4. 쌍방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들의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그 구체적 사항은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
5. 쌍방은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과 관련한 구체적 문제들을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계속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6.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은 4월 3일부터 4월 5일 까지 하며, 장소는 추후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2001년 1월 31일

금 강 산

기 타

김용순특사 방문 공동보도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용순 비서가 2000년 9월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였다.

남과 북은 이번 방문기간 여러차례 접촉을 가지고 현재 남북간에 제기되고 있는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려는 두분 정상들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앞으로 가까운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며 이에 앞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간의 회담을 개최하는 문제가 현재 논의중에 있는 데 대해서 환영하였다.
3.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의 생사 및 주소확인 작업을 9월중 시작하여 빠른 시일내에 마치기로 하였으며, 이들중 생사가 확인된 사람부터 서신을 교환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남북적십자회담을 9.20 금강산에서 개최하여 위 문제와 함께 올해 2차례의 이산가족 방문단 추가교환 문제,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운영 문제를 협의키로 하였다.
4. 남북간 경제협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투자

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9.25 서울에서 개최하며, 빠른 시일내 이를 타결키로 하였다.

5. 남북간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남북이 기공식을 개최키로 하였다.
6. 북측은 15명 정도 규모의 경제시찰단을 10월 중 남측에 파견키로 하였다.
7.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 사업을 위해 금년내 남북공동으로 조사를 실시,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키로 하였다.

2000년 9월 14일

